(제6-6-2호)

소송 등의 판결·결정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(기)
2. 원고・신청인	○○○증권 주식회사
3. 판결・결정내용	원고패(피고 전부 승소)
4. 판결・결정사유	판결 판결이유 요지: 원고는 피고의 업무소홀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,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, 피고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.
5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6. 판결・결정일자	2026. 9. 10.
7. 확인일자	2026. 9. 11.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상대방 항소 제기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 예정

<기재상의 주의>

주1)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의 판결·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
주2) “판결・결정사유”는 소송의 포기・취하・인낙・화해, 판결, 결정, 명령, 신청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.

주3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・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